

「녹용」 수입 실적은 없고 유통·투약은 예전처럼....

주 재 승/한국의약신문 취재부장

회분율 25% 이하여야만 하는 「녹용」.

그러나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재 관련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용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8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따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업소는 기존 판행에 의해 녹용을 유통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이나 한약방 약국 역시 이를 그대로 투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한방의료기관과 소비자간에 녹용류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안고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녹용류에 대한 회분율조정과 관련 업계의 녹용 유통실태, 한방의료기관 등의 녹용 투약에 따른 문제점을 조명해 본다.

□ 녹용의 회분율 정의

지난 1957년에 마련된 한약(생약)규격집에는 녹용의 회분율을 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7년 9월 23일 한약(생약)규격집이 개정돼 녹용회분율이 35% 이하로 바뀔때까지 녹용유통과 관련, 아무런 법적제재를 가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녹용에 대한 검사는 이때까지 한국의약품수

출입협회에 설치된 감별위원회가 전담해 시행해 왔고 그 방법도 「관능검사」로 지극히 제한적인 검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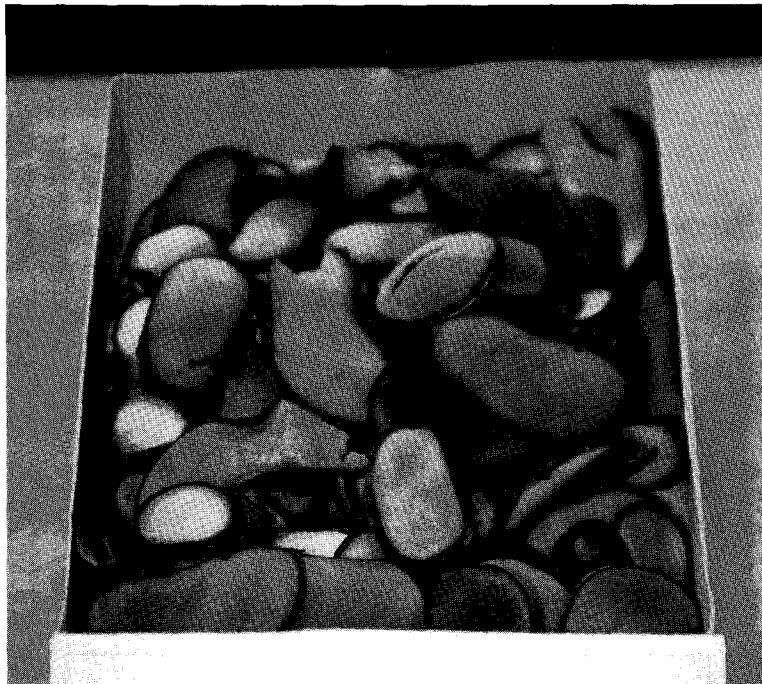
특히 감별위원회는 성상 등에 대한 검사에 치중했을뿐 회분율 함량을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한약재 관련업무가 복지부 약정국에서 한방정책관실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녹용회분율 문제가 제기된 것.

당시 약정국은 「녹용분말」에 대한 의약품허가를 1건 내주면서 회분율을 생약규격집보다 높여 잡았고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을 우려, 규격집의 녹용회분율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생약규격집 개정방안을 마련한 상태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역시 이 문제와 관련, 97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방정책관실에 규격집 개정을 요청하면서 복지부는 같은해 9월 23일 규격집을 개정, 녹용회분율을 25% 이하에서 35% 이하로 바꾼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녹용은 종전과 같이 상·중·하대 개념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가졌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명섭 의원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녹용정책은 꾀이기 시작.



△ 회분율 25% 이하만이 녹용으로 규정되면서 유통체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98년 3월 2일 규격집을 재개정해 녹용회분율 25%이하로 환원한 복지부는 5월 8일엔 회분율 25%이하는 녹용, 25%이상 35%이하는 녹용중품 이란 기형적 제도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규격집을 네번째 개정해 녹용중품 명칭을 「녹용각」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녹용유통의 문제점

대한약전과 한약(생약)규격집에 따르면 회분율 25%이하여야만 녹용이다. 25%이상 35%이하는 녹용각이고 그 이외의 부위는 「사슴뿔」이다. 즉 회분율이 35%이상인 사슴뿔(완전히 각질화되지 않고 털이 있는 것)은 유통근거가 없다. 녹각으로 유통하려면 사슴뿔이 완전히 각질화된 이후에 채취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따라 유통하던 녹용류(98년 3월 2일이전 통관분)도 99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제도에 맞춰 유통해야 한다.

특히 현행 규정에 의할 경우 수입시 녹용이면 녹용, 녹용각이면 녹용각, 녹각이면 녹각 용도로 수입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유통업계의 고민이다. 회분율 25%이하의 녹용만을 수입하려면 *kg당* 약 150불. 그러나 녹용각 용도(제일 아래부분의 회분율 35%이하)로 수입하면 평균 가격이 35불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녹용각으로 수입된 제품중 회분율 25%이하부분은 절단시 얼마든지 녹용으로 둔갑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법규의 허점이다.

이렇게 볼때 녹용을 수입한 업소는 가격부담으로 제품을 유통할 길이 막혀 버린다.

따라서 지금의 녹용정책을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니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이러한 사정 만큼이나 심각한 곳은 한방병·의원을 비롯한 투약기관.

법을 지키려면 당장 처방전부터 고쳐야 하지만 이곳에서도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

유통업소에서 녹용이라면 녹용으로 알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방의료기관들은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몇몇 기관이 고가녹용을 주문받고선 저가녹용을 첨약에 넣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고 한방의료기관에서 보약을 투여받았던 국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금 정부의 녹용정책 또한 이런 문제를 재발시킬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의 본질중 하나다.

업계와 한방의료기관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수입된 녹용각은 모두 16톤이며 녹용은 한건도 수입실적이 없다. 또한 올 1월부터는 관행에 의해 유통되던 형태의 녹용제고는 유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방병·의원들의 처방전에 녹용각은 없다. 모두 녹용으로 처방을 내고 환자들도 그렇게 알고 복용하는 것이다.

수입실적은 없는데 녹용은 버젓이 유통 또는 투약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 소비자들이 투약받은 녹용의 회분율을 의뢰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일부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한의원에선 일등급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던 대한한의사협회도 모든 한의사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약재에 관한 한 전문가를 자임하고 나선 한의협으로선 의외의 반응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편의주의적 행정을 펴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의협이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복지부 문제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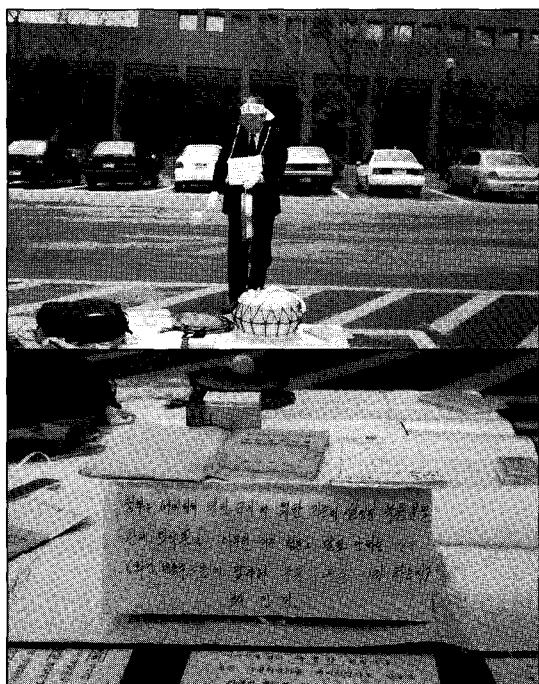
복지부는 녹용류의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다. 즉 녹용 용도로 들여왔더라도 회분율이 초과하는 경우 아랫부분은 녹용각으로, 또 회분율이 25% 이하인 부분은 녹용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앞서 분골(녹용의 가장 윗부분) 없는 상태에서 수입된 녹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린바 있어 복지부의 뜻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규격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지 상태에서 녹용을 들여와도 회분율 25% 이하는 녹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해선 이미 식약청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부터 이런 방침이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식약청이 관련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해 생긴 문제』라며 곧 보완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규격기준 적용과 느슨한 사후관리는 녹용정책 전반의 혼란과 더불어 관련직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포커스

「녹용각」이 웬말이냐?

백인범 호법생약 대표가 지난 3월 1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별첨규격에 의해 이미 허가받은 완전의약품인 「녹용분말」을 생약규격집에 맞춰 「녹용각 분말」로 명칭을 바꾸려는데 항의하며 징과 북을 치고 있다.